

## 태국의 여성발전정책\*

황규희\*\*

### I. 서론

일반적으로 태국은 양계(兩係) 친족제도, 모거제(母居制), 그리고 희박한 남아선호사상, 그리고 농업과 상업에서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이라는 성평등적 요인과 1932년 입헌혁명 이후 1933년에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되어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여성의 지위가 높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자는 대중 앞에 나서서 큰소리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며,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은 사회의 공적영역에서 배제된 채 주로 가정의 사적영역에서 활동하였다. 1960년대 태국의 산업화정책 이후 여성은 남성과 함께 공적영역의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국가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인력은 2차적 또는 산업예비군으로 취급되어 노동시장에서

---

\*본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부산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태국어과 교수. khee@pufs.ac.kr

의 성차별은 계속 되어왔다. 그러므로 태국사회에는 문화적·법적으로 여성억압과 성 불평등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태국에서 여성지위의 대변혁의 계기는 1973년 10월혁명 이후 민주화 시기에 제정된 1974년 헌법이다. 1974년 헌법 제3장 제27조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제3장 제28조에 모든 사람이 헌법상 동등한 권리와 자유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태국 헌법상 최초로 남녀평등권 조항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헌법상 남녀의 평등권이 보장되었으며 가장 민주헌법이며 국민헌법이라는 1997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여성억압과 여성차별조항이 많이 개정<sup>1)</sup>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적인 가족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요소가 남아 있다.

태국에서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는 유엔이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평등·발전·평화라는 주제로 멕시코에서 개최된 유엔세계여성대회에 여성위원회(National Council of Women) 대표가 ‘멕시코 여성선언’ 채택에 동참한 이후이다. 그리하여 태국은 1985년에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에 가맹하였고, 1995년의 북경선언과 행동강령<sup>2)</sup>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근대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 
- 1) 주로 여성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주된 법 개정은 가족법, 남녀고용평등법, 매춘 방지 및 금지법 등이다
  - 2) 북경 선언과 행동강령은 여성과 여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 유엔활동의 중심과제임을 재차 강조하고 성에 근거한 차별과 폭력을 당하는 여성인권침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인권문서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통하여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한다. 둘째, 법률과 관습하의 평등과 차별금지를 도모한다. 셋째, 법률에 대한 이해를 달성한다.

여권론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1980년대에 들어서 여성권익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가시화되게 되었다.

1989년 태국정부는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과 촉진을 목적으로 수상처 소속의 국가여성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s: NCWA)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정책을 제공하며 수행하고 있다. 태국에서 여성발전정책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협약, 국제노동협약(International Labor Convention), 그리고 1995년 북경선언 등의 국제협약과 국내법규에 의해 영향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태국은 1992년 씨리킷 왕비의 탄신 60주년을 맞이하여 ‘태국여성의 해’로 선포하여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요소를 철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sup>3)</sup>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정부기구와 함께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s: NGOs, 시민단체)들이 여성의 복지문제와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 사례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글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사회 전체를 위한 공동선을 실현하는데 여성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여성발전정책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21세기의 정보화시대에는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역할이 사회변화에 영향력 있는 주요 요인으로 인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2001년 1월 역사상 최초의 여성부가 신설되어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정책목표로 둔 여성정책 전담기구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도 21세기의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중요성을 두고 1989년 3월 수상처 소속의 국가여성위원회를 설치하였다.

3) 1992년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제거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은 다음과 같다. 장기 여성발전계획의 재검토, 외국인과 결혼한 태국여성의 자녀에 대한 태국 국적 취득, 산후휴가에 대해 여성공무원 경우에는 45일에서 60일로, 일반기업체의 여성근로자 경우에는 90일로 연장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3F·여성성(feminine)·감성(feeling)·가상(fiction)의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함께 국가발전의 주체세력으로 활동하기 위해 국가정책을 통해 여성억압이나 성차별의 근원을 해결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을 사실상의 평등으로 구체화시키려는 태국의 여성발전정책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이 글은 제2장에서는 태국의 여성발전정책의 배경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태국여성발전정책기구를 정부기구와 여성 시민단체(NGO)의 활동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태국의 여성발전정책의 주 내용을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 구성된다. 이 글은 국내에서 최초의 태국의 여성발전정책에 관한 것으로 동남아시아권의 여성발전정책을 이해하는데 자료가 될 것이다.

## II. 여성발전정책의 배경

유엔의 여성정책이 각 국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태국은 유엔의 여성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국가의 여성발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먼저 유엔의 여성정책을 살펴보고 태국의 여성발전정책의 배경으로서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 나타난 여성발전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유엔의 여성정책<sup>4)</sup>

유엔은 창설 이후 반세기 동안 세계의 평화와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 많은 변화와 발전은 물론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유엔의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 인권존중의 개념에서부

4) 유엔의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김은경(2000: 544-553)을 참고

터 여성의 권리는 인권의 일부로서 보호·신장하여 왔다. 1946년 유엔 창립총회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권리문제가 제의되어 유엔은 우선 여성평등에 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1946년 6월 여성문제 전담 기구인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를 설치하여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의 권리 증진을 위해 여성문제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다.

1960년대 유엔은 신생독립국의 참여로 인하여 이들 국가의 여성문제를 제기하여 국가발전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사회발전의 남성과 동등한 동반자로서의 여성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유엔은 사회 내 존재하는 결혼, 가족, 고용 분야 등의 11조항을 선정하여 1967년 ‘여성차별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후 유엔은 1975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여성회의에서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International Women's Year)’로 선포하고 1985년까지를 ‘세계여성의 10년(United Nations Decade for Women, 1976-1985)’으로 정하였다. 133개국이 참가한 멕시코대회에서 서구여성의 평등, 제3세계 국가의 발전, 공산권 국가의 평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여성문제가 논의되어 평등, 발전, 평화 개념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유엔은 40여 회원국과 4개 특별위원회 그리고 10여 개의 비정부기구가 사전 검토하여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을 채택하여 이 협약은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각국의 성평등 정책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1985년 ‘유엔 여성 10년’을 마감하여 이를 검토 및 평가하기 위한 세계회의가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어 372개 항의 ‘나이로비 여성발전미래전략(Nairobi Forward-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for Women)’을 제시하였다. 나이로비 대회는 성차별 개선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여성

의 정치참여 및 경제적 지위 강화를 강조하였다. 1995년에는 제4차 세계 여성대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었고, 주요 의제는 여성의 세력화, 특히 정치세력화, 경제세력화로 특히 젊은 여성이 사회·문화·정치·경제적인 리더십의 주체로 모든 차원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갖도록 특별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유엔에서의 여성 관련 정책결정은 각국의 여성지위의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태국의 경우에도 유엔의 여성정책의 영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 2. 태국 여성발전 프로그램

처음으로 태국에서 여성문제는 제3차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1971-1975)에서 인구통제와 가족계획이 하나의 정책으로 채택되었을 때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1975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유엔 제1차 세계 여성대회에 태국 대표단이 참가하고, 1976-1985년을 세계여성의 10년으로 결의하는 유엔의 정책을 지지한 이후 여성발전프로그램을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안 포함시켰다.

제4차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1976-1980)에는 청소년 및 여성발전프로그램이 청소년 장려와 발전, 그리고 농촌여성의 발전으로 세분화되었다. 여성발전프로그램은 지역발전국(Community Development Department)에 의해서 수행되었다.<sup>5)</sup> 교육·직업에 있어서의 여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고용·법적 조치들이 제시되었다. 즉, 교육을 통해 농촌여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자치활동에서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였

5) 이 프로그램에서 두 가지 여성문제를 지적하였다. 첫째, 소년이 소녀보다 교육의 기회가 많다. 여성의 문맹률은 25.2%인데 남성의 문맹률은 11.1%이다. 둘째, 비록 법에 의해서 여성과 남성이 직업 및 보수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졌을지라도, 관습상 여성은 진급과 보수에서 차별이 있다.

다. 그리고 우선 정부기관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진급의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보수와 안전에 대한 보장을 포함시켰다. 또한 여성에게 숙련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였다. 제5차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1981-1985)에서는 여성을 발전프로그램에서의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주요 집단으로 정의하고, 빈곤타파를 위해 빈곤지역의 여성발전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었다. 여기서 제기된 여성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동력; 저학력 농촌지역에서 41.9%를 차지하는 여성노동력. 둘째, 교육;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높은 문맹률. 셋째, 공중건강; 모자보건의 문제로 임신부의 단백질 결핍과 가족계획 문제. 넷째, 인식 및 제도; 남성이 여성 보다 생산적이라는 고용주들의 사고에 따라 남성이 여성 보다 많은 보수, 딸 보다 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적 태도, 정부의 불충분한 건강 혜택서비스, 문화·예술 활동에서의 저조한 여성참여, 정치 및 행정부분에서의 여성참여의 기회 부족, 여성활동의 촉진과 협력을 위한 책임 있는 부서의 부족 등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안에서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웠다. 첫째, 대상 지역을 ‘낙후된 농촌지역(backward rural areas)’으로 구분하여 주로 이 지역에 교육과 건강 서비스를 집중한다. 둘째, 노동·교육·국민건강·정치 및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치를 취한다. 이리하여 여성발전에 관한 장기계획 즉, 20년 계획(Twenty-Year Plan)이 특별전문위원회에 의해서 마련되었다. 20년 계획은 제5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과는 별도로 여성 집단을 농촌여성, 비농촌여성, 여성관리와 국영기업의 여성근로자, 비구니, 서비스 여성과 여성수형자 등으로 세분화시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였다.

제6차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1986-1990) 및 제7차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1991-1996)에서 국가발전과 여성발전을 분리하지 않았다. 이 계획

안에는 건강과 교육을 포함했으며, 20년 계획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이것은 여성발전촉진을 포함하는 안이며 특히 낙후된 농촌지역과 슬럼가의 여성, 여성에 대한 불공정한 법 개정, 모든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 및 행정참여의 지원, 여성발전부문에서의 공공 및 민간 협력증진, 효율적인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제도의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제7차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에서의 성차별적인 요소 제거에 중점을 두고 법 개정을 통해 남녀 평등권의 보장을 시행하는 것이다.

제8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1997-2001)에서 5개년 여성발전계획(Five Year Women's Development)을 공식화되었다. 제8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은 인간중심의 발전(people-centered development)에 초점을 두었다. 각 개인의 재능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육체적·지적·정신적 안녕의 측면에서 출생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인간의 잠재력을 육성·발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증진시켜 국가발전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제8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기간의 여성발전계획은 제8차 국가발전계획, 여성을 위한 균형 있는 정책과 계획(Perspective Policies and Plans : 1992-2011), 그리고 1995년 북경선언에서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행동강령과 일치하기 위해 미래 여성발전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첫째,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및 지적 안녕을 위해 잠재성을 개발하여 덕망과 유능을 겸비한 건강한 여성이 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모든 여성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며 정책결정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발전에 참여한다. 둘째, 여성에게 용이한 환경을 조성한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발전을 포함하여 가족과 지역사회차원의 발전에 초점을 둔다.<sup>6)</sup>

6) 제8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 여성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삶



제9차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2002-2006)은 제8차 국가경제사회발전 계획과 동일한 구조로 가난한 자와 장애인의 복지확대,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와 분권을 통한 지역사회 권력위임, 올바른 통치와 자립심이 주요 목표이다. 이 목표는 기본적인 서비스부문(교육 및 사회 서비스, 자원과 정보)에 중점을 두고 발전과 정책결정에서의 대중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현 탁싌(Thaksin Shinawatra) 정부의 여성발전정책은 ‘긴밀한 가족(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7)</sup> 이는 가족이 사회문제로부터 모든 가족구성원의 보호자이며 경제회복의 심장부이기 때문이다.

### III. 여성발전정책기구

여성문제를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여 여성발전정책을 시행하는 기구로는 정부기구와 여성 시민단체(NGO)로 나눌 수 있다.

---

의 질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전략. 둘째, 여성의 지위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개선 전략. 셋째, 여성에 대한 성차별 제거 전략. 넷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에 대한 발전 전략. 다섯째,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운영제도 개선 전략이다.

- 7) 탁싌 정부의 여성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참여로 각 지역에 가족발전센터(Family Development Centre)를 건립한다. 이 센터들은 건강, 가족계획, 그리고 가족문제에 관한 것은 물론 가족에 관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지역사회와 각 직장에 입학 전 아동을 위한 아동 보호센터의 설립을 지지한다. 이 센터는 양질의 자질과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아동의 권리침해 및 아동을 확대하는 자에 대한 처벌과 방지를 목적으로 법 개정뿐만 아니라 엄격한 법 시행을 한다. 넷째, 여성의 권리, 지위 그리고 역할을 향상시킨다. 여성이 정치·경제·사회 부문에 있어서 자신의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참여하기 위해 잠재력을 개발시킨다. 다섯째, 노인(연장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노인에 대한 공경과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노인 건강책임서비스를 발전시키며 노인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다.

## 1. 정부기구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정부기구로서의 발족까지는 여러 차례 위원회의 이름 변경을 거쳐 현재에는 1989년 3월에 발족한 국가여성위원회가 있다. 여성발전에 관하여 정부는 국가위원회 및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식적인 국가계획아래서 여러 기구와 부서를 통해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정부는 유엔의 1975년 세계여성의 해의 선언을 계기로 10여 년 동안에 쿤잉 암퐁(Khunying Amporn Meesook)의 기획하에 위원회의 이름이 수차례 변경되었다.

1974년 정부는 최초로 교육부 산하 집행위원회를 조직하여 1975년 유엔의 세계대회에 이들을 파견하여 유엔의 메시지를 정부 측에 전달하였다. 즉, 모든 유엔회원국은 여성문제에 관한 세계행동계획(World Plan of Action)에 참여하기 위해 위원회를 조직할 것과 각국의 정부에게 여성 및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기구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1978년에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집행위원회를 경제사회발전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NESDB)소속의 여성 및 아동개발계획 소위원회(Subcommittee in Planning for Women and Child's Development)로 대체하였다. 이 여성 및 아동개발계획소위원회는 제5차 국가경제발전계획에 여성발전에 관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데 공헌하였으나 1978년에 해산되었다.

1979년 3월 6명으로 구성된 임시 여성발전전문위원회(Task Force on Women Development)가 여성문제 연구와 해결을 위해 발족되어 위원들의 불확실한 지위 등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성문제를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같은 해 11월 NESDB가 사회프로그램국 내에 편입되어 여성발전문제를 위한 소위원회가 임명되었다. 이 소위원회는 여성발전계획을 단기계획(1982-1986)과 장기계획(1982-2001)으로 나누고,

NESDB 직원은 단기계획안에서 활동한 반면에 장기계획안은 9명의 관료, 8명의 학자, 그리고 1명의 언론인이 활동하였다. 이 계획안이 국가차원에서 책임지게 되므로 소위원회의 위원들은 자신의 지위를 수상처 소속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여 1981년에 여성문제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s)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내각은 1981년 말에 여성문제위원회를 해체하였다.<sup>8)</sup> 결국 정부는 1년간 논란 끝에 여성정보센터(Women Documentation Centre)와 해체된 위원회를 비정부조직 태국여성전국위원회(National Council of Women of Thailand: NCWT)<sup>9)</sup>로 이관시켰다.

1983년에 두 여성의원(DR. Yupa Udomsak과 Mrs. Supara Masdit)의 여성문제 전담기구의 공식화 요구를 받아들여 1983년에 내무부산하의 여성발전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Women's Development)가 발족되었다. 1989 3월 8일 차차이(Chartrchai Choonhavan) 수상의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수상령의 규칙과 법규가 발표되어 수상처 소속의 상임기구로 여성문제 조성 및 협력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Co-ordination of Women's Affairs)가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가 현 태국의 국가여성위원회이며 수상처 소속의 상임위원회로서 국가차원에서 여성문제에 관해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고 있다.

#### 1) 국가여성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s: NCWA)

1989년 3월 정부는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과 증진을 목적으로 수상처 소속의 국가여성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국가차원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정책을 제공·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NCWA의 의장

8) 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여성문제위원회에 국가예산의 할당이 없으며, 민간단체가 여성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비용이 적게 든다고 주장하였다.

9) NCWT에 관해서는 여성 시민단체에서 자세히 다룬다.

은 수상 또는 부(副)수상이며, 부의장은 수상이 임명한 장관이다. 이 위원회는 13명의 정부기관의 장, 2명의 민간단체 대표, 그리고 10명의 여성전문가 등 약 30명으로 각료와 시민대표로 구성된다. 2002년 10월 관료제 개혁 이후에 NCWA는 사회개발인간안전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NCWA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활동 및 역할과 여성지위 증진을 위한 종합 기본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한다. 둘째, 그 계획과 정책의 실행결과를 조정·감독·평가한다. 셋째, 정부기관, 국가조직, 공기업, 그리고 민간조직에서의 여성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넷째, 여성들의 활동, 역할, 지위향상을 위한 법 제정이나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 수상에게 논평과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다섯째, 1년에 2회 이상 태국 여성의 상황에 대해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여섯째, 관료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종사자들을 초청하여 유용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한다. 일곱째, 국무회의에서 위임받은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 등이다. 이 외에 NCWA는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같은 주요한 문서를 번역·출간한다.

NCWA는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9개의 소위원회-건강·환경위원회, 교육·고용·문화위원회, 사회·정치 참여위원회, 법률과 법규 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여성 정보체계 개발위원회, 비자발적 매춘근절을 위한 위원회, 가족위원회, 여성 노동·복지위원회-와 5개의 특별위원회 — 제4차 세계여성회의 활동추진위원회, CEDAW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준비위원회,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적 장치개선위원회, 제8차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1997-2001) 내의 여성발전계획준비위원회, 결혼여성지위에 관한 법률과 법규위원회 — 를 설치하였다.

NCWA의 여성발전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잠재성 개발 및 삶의 질적 향상. 둘째, 여성의 법적 평등, 안전, 보호 및 복

지 향상. 셋째, 여성의 사회발전 참여. 넷째, 매춘산업 종사자의 문제점 개선. 다섯째, 여성에 관한 정보 보급과 변호. 여섯째, 여성에 관한 연구와 데이터. 일곱째, 국제여성기구와 협력 등이다. 그리하여 지난 2·3년 NCWA에 의해 여성발전과 관련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를테면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과 계획 조망(1992-2011), 여성에 관한 국민선언(1992), 여성의 지위 및 행동강령에 관한 리포트(1994), 제2차 및 제3차 합동 여성성차별 제거위원회의 리포트(1996), 제8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의 여성발전계획(1997-2001) 등이다.

국가여성위원회 이외에 여성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과 계획안을 공식화하는 정부조직으로는 농업진흥국(The Department of Agricultural Extension), 지역발전국(The Community Development Department), 비정규교육국(The Department of Non-formal Education), 보건국(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복지국(The Department of Public Welfare), 노동국(Department of Labour), 협력증진국(The Cooperative Promotion Department), 산업진흥국(Department of Industrial Promotion), 국가경제사회발전청(Office of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등이 있다.

## 2. 여성 시민단체(NGO)

여성 시민단체는 태국여성들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하여 유엔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1985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제1차적으로 여성의 권리 또는 복지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들의 범위는 매우 넓다. 순수한 민간조직으로부터 태국사회의 고위층과 연합된 단체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여성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여성 시민단체들은 성향과 활동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그룹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복지지향조직으로 주로 자선행사와 가족법 내의 성차별 제거 요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로는 태국여성전국위원회(National Council of Women of Thailand: NCWT), 태국소녀선도회(Girl Guides Association of Thailand: GGAT), 여성지위향상연합(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the Status of Women: APSW)<sup>10</sup>이다. NCWT는 정부와 여성조직의 활동조정을 목표로 한다. GGAT는 젊은이와 여성들의 훈련에서 성과를 이루었으며, APSW는 가난한 여성들을 위한 긴급피난처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단체들은 1974년 제정된 신헌법을 근거하여 성차별을 인정해온 각종 정부의 관계법령과 법규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내무부에서는 여성에게도 부군수 자격을 부여하였고, 국방부는 1978년 여성에게도 장군진급의 기회를 보장하였다. 사법부 또한 아동 및 청소년 법정뿐만 아니라 다른 법정에서도 여성이 판사로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무부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자신이 법적으로 보호자이면 남편의 동의 없이도 여권신청을 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여성대사의 임명도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그룹은 사회주의적 이념의 정보운동조직으로 이들은 도시 근로여성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직장 내에서의 임금과 승진 등의 성차별 요소에 관해 법률적 자문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단체로는 여성의 친구(Friends of Women: FOW)<sup>11</sup>, 여성재단(Foundation for Women: FFW)<sup>12</sup>, 유흥

10) 1974년에 창설된 APSW의 주 대상은 생활과 자립이 곤란한 여성과 아동으로 최근에는 AIDS에 감염된 여성과 매치도 포함된다. 이들에게 긴급피난처를 제공하며, 여성교육센터와 젠더발전연구소(Gender 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GDRI)를 운영한다. GDRI는 젠더문제를 여성정책에 반영하며, 여성의 역할과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를 촉진시킨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성정책과 정당을 감시하는 여성정치네트워크(Women in Politics Network)의 비서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연구,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조사, 여성의 정치참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업소여성보호교육기관(Education Means Protection of Women Engaged in Recreation: EMPOWER)이다. FOW와 FFW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매춘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며 이 단체들은 여성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특히 FOW의 주도하의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포르노산업에 반대 캠페인은 벌인 결과 1995년 12월 NCWA는 포르노산업 반대 캠페인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EMPOWER는 매춘여성문제에 대해 활동하고 있으며 매춘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새로운 전문기술과 지식, 건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일과 이들을 AIDS로부터 보호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여성 시민단체들은 개혁성향의 여성조직과 연계하여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1995년 북경 NGO 여성포럼 이후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련된 모든 부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태국여성파수꾼(Thai Women Watch: TW2)<sup>13)</sup>으로 1996년 5월 NGO 포럼에 참가한 태국 비정부기구 지도자 15명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 단체는 신헌법에 대한 공공의식을 확대시키고 젠더(gender)문제를 인권과 연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여성 시민단

- 
- 11) 1980년에 설립된 FOW의 주요 목적은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널리 대중에게 알리며,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에 협조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여성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특히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리보호, 젠더 교육에 관하여 전심전력을 하고 있다.
  - 12) FFW는 여성의 인권옹호와 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 가정폭력 및 성폭력 - 를 대중에게 홍보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 단체는 고통 받는 여성들에게 쉼터와 법률 자문을 지원하며, 젠더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가치관 형성을 조성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섹스산업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 13) TW2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행동강령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태국 국내외의 국민에게 전파하고 또한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둘째, 태국 내에서의 세계 행동강령의 이행을 감시한다. 셋째, 태국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지지 및 지원한다.

체들이 점차 국제적 차원에서의 여성의 권리 및 성평등의 증진과 성차별 방지를 위한 활동으로 정부기관내의 여러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여성 시민단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여성조직으로 정부와 여성조직 사이의 가교역할을 해 온 태국여성전국위원회(National Council of Women of Thailand: NCWT)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4)</sup>

1) 태국여성전국위원회(National Council of Women of Thailand: NCWT)

NCWT은 1956년 9월에 창설되어 1961년 5월 이후 씨리킵 왕비의 후원하에 있으며, 이 단체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류계층의 여성이 동참하여 주로 자선단체의 성격을 지니며 전국에 100개 이상의 지부에 약 500,000명 이상이 있다.

NCWT의 창설 배경은 1938년에 집권한 피분(Phibun Songkhram)군사정권이 국가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민족주의를 고취시킬 때 수상의 부인 탄푸잉 라이아트(Thanphuying La-iat)이 국가건설에 남성의 참여와 함께 여성의 동참을 권유하기 위해 고위층 여성의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라이아트 여사는 피분 수상의 랏타니움 정책<sup>15)</sup>과 일치하는 국가관을 고취시키고자 자신이 여성문화국(Women's Cultural Bureau)의 국장직을 수행하였으며, 1943년 도지사, 판사, 경찰, 고위 장성의 부인들을 주축으로 한 여성문화클럽(Women's Cultural Club: WCC)이라는 민간여성협회를 창설하였다. 또한 그녀는 1953년에 WCC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각 지방마다 도지사부인은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는 여성문화증진협회(Women's Cultural Promotion Association: WCPA)의 협회장이 되었다.

14) NCWT에 관한 것은 <http://www.inet.co.th/org/ncwt> 참조

15) 태국의 근대화를 위해 피분 수상이 태국 국민에게 문화적·경제적·정치적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시킨 국가건설정책이다.



WCC와 WCPA가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여성에게 신(新)사고를 심어주고 농촌 여성에게는 현대적 가치관과 관습을 가르쳤다. 1950년대 중반에 유엔의 여성문제에 관한 회의와 세미나 개최시 WCC가 지원·협력하였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여성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f Women: ICW)의 로즈(Rose Parson) 위원이 태국을 방문하여 라이엇 여사를 만나 ICW와 연계할 수 있는 태국의 여성조직의 정보를 교환한 끝에 1956년에 NCWT가 탄생하게 되었다.

1957년 싸릿(Sarit Thanarat) 군사정권에 의해 NCWT의 활동은 마비되었으나, 새 의장에 응암찻(Ngarmjit) 공주가 임명되어 정치적 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이 조직이 유지되었다. 1959년 5월 제2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초대 의장에 응암찻 공주가 선출되고 ICW에 가입할 것을 결정하고 공주는 제2기(1961-1963)의장에 재선출되었다. 응암찻 공주는 ICW부의장, 의장 및 명예의장으로 1983년 사망할 때까지 NCWT 활동을 지속하였다. 현재 NCWT의 의장은 선출직이며 의장은 자동으로 NCWA의 위원이 된다. NCWT의 위원은 중상류계층의 부유층과 정부 고위직의 부인들로 구성되어 대다수 빈곤계층의 겪는 여성문제 보다는 고위층 활동에 관심이 있다고 비난받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 NCWT는 주로 민중민주주의의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NCWT의 구성은 일반회원(이사회 2/3 이상 찬성 득표한 여성단체), 동맹회원(이사회 2/3 찬성 득표한 여성단체), 연합회원(이사회 3/4 찬성 득표한 여성단체), 그리고 명예회원(전직 NCWT 의장)으로 나뉜다. 회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약 140명의 회원과 최소한 3년 이상 활동한 단체에 소속되어야 한다. NCWT의 행정 조직은 9명의 선출직 이사회, 11명의 임명직 집행위원회, 15명의 상설위원회, 12명 이상의 프로젝트 위원회가 있다.

NCWT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복지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태국의 여성단체간의 정보와 사과의 교환을 위해 협력한다. 둘째, 태국 여성의 지위와 복지,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수행과 여성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여성과 사회에 유익한 활동 수행에 있어서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모두 국내외 단체와 협력한다.

NCWT 규약에 따르면 여성의 지위향상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간의 협력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NCWT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이 NCWT의 활동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1956-1967)의 활동은 주로 여성의 근대화를 위해 독서와 저축 습관을 ‘바람직한 가치관과 행동’이라고 교육시켰다. 처음에는 방콕에서 시작하여 점차 지방에서 지도력교육과 가정학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1961년 최초의 프로젝트는 방콕 교외의 트룩잔 지역의 가정복지증진을 위해 시작한 트룩잔 지역클럽프로젝트(Trokjan Community Club Project)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여성의 역할이 지역사회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며, 검약과 독서와 같은 바람직한 습관을 여성에게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뚜완짜이 기금(Tuanjai Foundation)과 씨리켓 왕비의 지원하에 농촌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프로젝트를 확대시켰다.

2단계(1968-1977)의 주요활동은 정부지원하의 학교이외의 교육-가족 계획, 소비자 보호, 그리고 비정규 교육-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방콕에서 시작되어 주로 산아제한, 소비자 의식 자각, 그리고 소득증대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데 있다. 이 시기는 여성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하였으며, NCWT의 요구로 정부지원에 의한 태국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와 출판물이 발간되었다.

3단계(1978- )의 활동은 정부가 1981년에 NCWT에게 여성발전위원회와의 협력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여성 및 청소년의 안전, 고유의 예술과

수공예에 관한 프로젝트로 전환하였다. 1983년 제5차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에 따라 교육, 건강, 문화, 고용, 여성의 지위향상, 빈민촌 개혁,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여성 분야의 프로젝트를 결정하여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여성발전프로그램을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NCWT의 내부문제로 인하여 실패하였으나 NCWT의 건강과 직업교육에 관한 교육프로젝트는 계속하였다. 최근의 활동(1997-2000)으로는 여성에게 기회가 적었던 폭넓은 사회서비스부문을 돌아보고,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교육, 직업, 가족의 삶, 건강 그리고 태국문화에 대한 증진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회의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NCWA를 통한 정부의 여성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해 모든 여성단체간의 업무뿐만 아니라 회원간의 긴밀한 협력과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지부단체를 방문함으로써 문제해결의 방법과 조치에 협력하였다.

이외의 여성 시민단체로는 태국사회복지위원회(Thai Council on Social Welfare of Thailand), 태국간호사위원회(The Council Nurses of Thailand), 세계여성연합국가(Associated Country Women of the World), 태국가족계획협회(The Planned Parenthood Association of Thailand), 태국여대생협회(The Thai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태국여성변호사협회(Women Lawyer's Association of Thailand), 세계여성기독교협회(World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YWCA), 태국여성클럽(Thai Women's Club) 등이 있다.

#### IV. 여성발전정책 내용

태국사회에서의 성차별과 불평등 철폐를 위한 정부기구 노력과 여성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여성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성도 국가발전의 주체세력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국가정책으로서의 여성발전

정책은 법 개정과 국가경제사회개발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 및 정치적 기회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목적에 두고 있다. 여러 가지 여성발전의제 가운데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남녀평등권 보장,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 확대, 그리고 매춘 근절을 중심으로 태국의 여성발전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sup>16)</sup>

### 1. 남녀평등권 보장

1973년 10월 학생 및 지식인 중심으로 군사독재정권이 붕괴된 이래 태국은 민주화시기로 접어들면서 발전과정에서 구(舊)관습과 태도에 저항하면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 및 불평등에 관한 인식이 새롭게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즉,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해 의식변화가 이루어지면서 1974년 헌법 제27조와 제28조에 남녀평등권을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가족법 개정을 통하여 성차별 및 불평등 요인을 철폐하고 있다. 이러한 남녀평등보장권이 헌법에 보장되기까지는 NCWT와 APSW 등의 시민단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1976년 개정된 가족법에는 남편이 혼인상의 부부의 대표자이며 주거지 선택권과 가사운영에 대해 지시한다는 조항을 폐지하였다. 이로써 아내직업에 대한 남편의 승낙폐지, 부권(父權)에 대한 권리폐지, 그리고 부부의 재산공동소유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결혼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는 여전히 없으므로 결혼 전 남편의 혼인사실에 관한 확인과정이 법적으로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아내들은 남편의 사망 이후에 남편이

16) 이외에도 농어촌 가계 소득 향상을 위한 농어촌 여성의 기술훈련, 도시 빈곤계층의 여성교육 및 직업프로그램, 여성과 아동 폭력제거를 위한 정책 등이 있다.

다른 여성과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되며, 둘째 부인(첩)으로 되는 경우에 결혼사실은 무효가 되어 공동재산권이 없어진다(민상법 제5권 제1498조). 그러므로 1976년 가족법에는 여전히 성차별 조항이 존재하였다.

1990년에 개정된 가족법에는 여성이 결혼에 동의하는 대가로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 또는 양육자인 부모에게 재산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하였다. 그러나 만일 그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남성은 그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 1992년과 1996년 헌법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약혼, 결혼, 그리고 이혼의 경우 부정(不貞)에 대한 보상금 지불에 관한 법을 폐지함으로써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이 평등권을 인정하였다(Women's Wire 96/04/09). 즉 만일 어느 한 측의 부정이 입증되면, 그 약혼 또는 결혼을 취소시킬 수 있는 권리를 남녀 모두에게 준 것이었다. 이전에는 약혼녀의 경우, 자신의 약혼자가 다른 여성과 성행위가 있었을지라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 반면에 약혼자는 자신의 약혼녀와 성행위를 가진 남성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던 것이다. 지난 60여년 간 아내는 단지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또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대우했을 경우에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 반면에 남편이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은 첩(둘째 부인)을 두면, 그의 본부인은 간통을 사유로 이혼요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가족법 개정안에는 여성이 자신의 남편과 간통한 여자와 남편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내도 남편의 간통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도록 여성에게 평등권을 보장한 것이다.

CEDAW와 북경행동강령을 토대로 성(性)을 근거로 불공정한 성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남녀평등권을 1997년 헌법 제3조 제30항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람은 법에 평등하며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는다. 둘째,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셋째, 출생, 인종, 언어, 성, 나이, 신체적 조건, 지위, 경제 및 사회적 지위, 종교, 교육 또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치적 신념에 의한 차별을 금한다. 넷째, 평등권과 자유에 대한 행사를 조성하기 위하여 또는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는 제3조에 명시된 바처럼 차별을 고려하지 않는다. 특별히 제5조에서 여성발전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장려하며, 성의 평등을 촉진하며,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구성해야한다(제5조 제80항). 둘째, 국가는 고령자, 가난한 자, 장애인, 그리고 생활과 자립에 있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해야만 한다(제5조 제80항). 셋째, 국가는 고용할 수 있는 사람, 노동의 보호 특히 어린이와 여성 근로자,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를 조성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공정한 고용 보상을 촉진해야만 한다(제5조 제86항).

남녀 성차별조항의 철폐에 대한 인식의 결과는 1997년 10월 북경행동강령 전담 국가기구 NCWA가 여성발전을 학제적 협력하에 통합을 목표로 한 여성개발계획의 발표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 여성의 권리보호와 차별철폐, 소수에 대한 기회제공, 각 분야 사회경제정치 개발에 있어 여성의 참여증진 등의 다섯 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뒤이어 같은 해 11월 추원(Chuan Leekpai)정부는 여성문제 — 여성과 아동 노동자의 보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법률과 규정의 개선, 거리의 아동, 아동 근로자, 매춘문제에 관해 NGO를 포함한 사회기관들의 활동지원 — 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NCWA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공동참여 하여 성평등,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여성차별철폐, 여성노동자와 국회 특별위원회의 여성대표의 보호를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NCWA와 여성 시민단체들의 꾸준한 활동에 의해 성차별적인 요소의 제거를 준수하는 국제협약내용에 따라 태국은 1985년에 7개의 유보조

항을 남긴 채 CEDAW에 서명하였으며 2003년에는 유보조항 1개항이 남아 있다.<sup>17)</sup> 태국정부는 성차별협약에 따른 정책으로 다음 6개 사항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여성은 모든 행정직에 참여한다. 이 협약의 서명 이전에는 군수직에서 여성은 배제되었다. 이 조항이 제거된 이후 여성은 지방 도지사, 군수, 군장성에 임명된다. 1994년 최초로 여성도지사의 임명, 1996년 최초의 여성군수가 임명되었다. 1995년 말에는 4.5명의 여성이 군장성에 임명되었다. 둘째, 여성은 자신의 재산운용에 있어서 남성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셋째, 자녀의 국적에 관한 것으로 1992년 국적법 개정에서 1993년 이후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태국여성의 자녀는 어머니의 국적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태국남성의 외국인 여성 배우자는 태국시민권을 취득하기 쉽지만 그 반대인 경우에는 어렵다. 이에 대한 논의는 2003년 6월 성명법개정에 따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넷째, 내무부규정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노동형태에서의 동등한 임금을 지급한다. 다섯째, 여성은 육군사관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을 받기 위해 입학할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 이 조항이 1995년에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그리고 공군사관학교에 여성이 응시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여섯째, 여성의 성(性) 선택권에 관한 것으로, 2003년 6월 성명법 개정에서 의해 결혼한 여성이 과거처럼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결혼 전 사용하던 성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게 되었다.

17) 제 29조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 2.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확대

여성문제는 성차별적인 사회, 정치체계 특히 성역할체계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평등참여는 실질적인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평등한 참여로 인하여 모든 정책에서 여성의 관점과 이익이 반영된 평등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져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최민자 2000: 507-508). 다시 말하자면, 민주사회의 자원분배과정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정치참여는 정당치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요구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를 지키고 자신의 요구를 표출하기 위한 정치과정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태국은 1932년 입헌혁명에 의해 절대군주제가 종식되고 민주주의 헌법이 도입되어 여성의 참정권이 헌법에 보장되었지만 여성의 정치참여는 1949년 북동부지역의 우본라차타니에서 보궐선거에 의한 최초의 여성의원 어라핀 여사(Mrs. Orapin Chaiyakarn)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 태국여성의 68%가 노동인구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정치인의 수가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Nation 00/07/10)라고 지적한 바처럼 태국의 여성정치인의 낮은 수치는 톰슨이 설명한 여성의 정치참여의 장애요인<sup>18)</sup>에서 이해할 수 있다(Thomson 1993:12-14). 첫째, 태국사회의 편견이다. 여성은 복종적, 약하고, 지도자로서의 결단력이 약하고 무능하다. 그러나 남성은 강하고, 공격적이며, 지도자로서의 단호하고 능력이 있다. 둘째,

18) 태국사회에서 상좌불교의 가치관에 따라 여성을 ‘오염된 성(性)’으로 인식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남성의 힘과 권력을 고갈시키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노동의 성(性)분화이다. 여성은 전적으로 집안에서 가정과 자녀양육의 책임을 진다. 셋째, 태국정치의 반(半)민주적 성향에 있다. 태국정치는 오랫동안 군부정치로써 여성의 군참여 금지로 인해 정치권력이 주로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넷째, 정당의 정책결정에서 주로 남성이 장악하므로 거의 여성후보를 정당에서 추천하지 않는다. 다섯째, 여성후보자의 재정적 지원의 결여이다. 정당법에 의하면, 국회의원과 방콕시장은 정당에 소속되어야 하며 지방의회·구의회의 후보자들은 당과 독립적이므로 자신이 선거캠페인에 책임이 있으며 가족의 지원 없이 여성이 지방의회에서 선출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1990년대 이후 태국의 시민단체들의 활동방향은 정치개혁 요구로 선회되었다. 특히 의사결정과정에서 동등한 남녀참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정부는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하였다. 첫째, 태국헌법에 의해서 여성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 결과 평등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성에 대한 진부한 편견을 바꾸며 정부는 정부관리, 의원, 지방의회 및 시의회에서 여성 대표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3년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정당법에 의한 쿼터제를 도입한다. 모든 정당은 의회선거에서 여성후보쿼터제<sup>19)</sup>를 도입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 셋째, 여성은 일부 압력단체 — 농민단체, 기업인, 노동조합원 — 와 함께 여성이 정치의 장에서 대표성 확보를 위해 활동한다.

이 정책 발표 이후 태국여성의 정치참여는 남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있다. 1986년 총선에서 여성의원은 전체 의원 347명 가운데 3.46%인 12명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의 총선에서 여

19) 노르웨이와 캐나다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후보선출과정에서의 비민주적이며, 유능한 남성 배제하여 이것이 오히려 역 성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성의원은 전체의원 393명 가운데 5.6%인 22명에 이르렀다. 1997년 신헌법에 의하여 상원의 선출방법이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된 이래 2000년 3월 선거에서 21명의 여성의원이 당선되어 전체 상원의원의 9.5%에 이르렀다(Nation 00/03/11). 또한 2000년 7월 방콕시장 선거에 최초로 여성이 출마하여 당선은 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5년 지방의회에서 임명직 도지사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3%에 이르렀고, 여성군수는 한 명도 없었으나 여성 부군수는 10.5%에 달했다. 같은 해 선출직 여성 도의원 4.9%, 여성 시의원 6.0%, 여성 군의원 1.1%, 그리고 여성구의원 1.6%에 이르렀다(Thomson 1995:44). 이와 같이 여성의 낮은 비율은 지방의 군차원에서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지방행정조직에서 소수의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향상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4년 지방행정법령(Local Administration Act of 1974)이 개정된 이후 1982년에 과거 캄난(Kamnan:읍장)의 출마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조항이 삭제되어 여성도 캄난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1982년에 최초의 여성캄난에 말리잔 여사(Ms. Malichan Pengwong)가 임명되었다.<sup>20)</sup> 더욱이 1999년에 가장 작은 행정단위 땀본(Tambon)에 여성의 지방행정참여를 고무시키기 위해 여성후보자를 30%의 비율로 정함으로써 여성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관료로는 1988년 쿤잉 쭈팻뜨라(Khunying Supatra Masdit)선출직의원이 최초로 장관직에 임명되었으며, 1991년 내각에서 모든 정부기관은 성차별 법규를 검토하여 국가안보와 관련 있는 자리를 제외하고 여성도 직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하였다. 1999년 4월 최초로 수상처 사무차관이며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의 위원장에 여성 법률전문가 파닛(Phanit

20) 여성 캄난 비율이 1989년에 0.49%이었으나 1996년에는 1.52%로 증가하였다.

Nitithanprapas)이 임명되었다. 행정직에서의 여성의 참여는 1996년 하위직 공무원(C1-C3)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위직 C9에서 20.77%, C10에서 10.56%, C11에서는 단지 6.45%에 이르렀다(Poonnachit-Korsieporn 1999:120). 여성발전정책을 통해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다소 확대되고 있으나 여성의 정치참여는 주로 하위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위직에서의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다.

### 3. 매매춘 근절

태국에서 매춘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정규직 취업의 기회가 적고, 여성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남성의 그것에 비해서 낮으며, 매춘이 고소득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매춘이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무엇보다도 경제적 요인임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외에 태국여성의 매매춘<sup>21)</sup>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는 1905년 쥘라롱꼰 대왕(King Chulalongkorn: 재위기간 1868-1910)의 노예제 폐지 이후 삶의 한 방식, 모중심의 친족사회에서의 가족 부양의 책임자, 그리고 상좌부 불교문화에 따른 여성의 숙명론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들 수 있다(황규희 1999:141-147).

특히 태국의 산업화 정책 이후 태국여성이 국가발전에 있어서 남성과 함께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환경에서 현실적으로 남성에 비해 많은 노동시간과 낮은 임금으로 성차별을 받고 있다. 수출위주의 산업화 정책에서 노동력은 주로 탈농촌의 여성이주자에 의존하였다. 1960-70년대 사이에 북동부 지역에서 방콕으로 농촌출신의 이주자들이

21) 대부분의 여성운동가들은 매매춘을 '성별 불균형체제가 배태시킨 사회의 특별하고 어두운 생활양식'이라고 정의한다(李永愛 1996:47).

상당히 증가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15-24세에 집중되며 특히 10-19세의 여성이주자가 남성의 수를 초과하였다. 불행하게도 농촌여성의 도시이주는 도시 평균 생활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게 되어 자신들의 가족부양이 매우 어려웠다. 도시지역으로의 여성 이주자들은 낮은 교육수준, 가족의 부양 책임감, 태국사회에서의 매춘에 대한 관용성,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욕구와 느슨한 사회적 통제로 인하여 쉽게 매춘행위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1997년 7월 IMF관리체제하에서 실직자의 수가 전체 노동인구의 10%인 300백만에 달하면서 제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실업난이 발생하여 가정파괴와 매춘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특히 아동매춘을 확산시켰다.

1984년에 AIDS의 출현으로 일시적으로 매춘산업이 주춤했으나, 점차 매춘여성의 수가 증가하며 이들의 나이도 어려워지고 있다. AIDS 확산으로 매매춘은 태국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태국에서 매춘에 관여하는 여성은 태국여성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얀마 국경지역의 소수종족의 소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태국사회에서 매매춘은 국제적으로 연계된 매춘산업으로 인식되어 시민단체들이 국제단체와 협력하여 여성의 권리보호를 위해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1985년 여성 시민단체에 의해서 매춘부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도입의 제안이 있었으나, 이는 오히려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런 방식의 매춘 합법화는 도덕적 수준을 더 낮게 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태국에서 아동매춘에 대해 적용시킬 수 있는 법은 형법 제282조-제285조의 15세 미만의 여성에게 성행위를 저지른 성범죄법과 8세 미만의 아동유괴법에 해당된다. 1992년 추원정부의 매춘여성에 대한 착취방지 및 억압과 아동매춘 폐지선언에 힘입어 여성 시민단

체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 1995년 9월 방콕시의 3개 경찰서에 여성 및 아동문제를 담당하는 15명의 여성조사관이 임명되었다.

과거 태국 매매춘의 주 요인은 빈곤이지만 오늘날에는 빈곤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상업주의, 소비주의가 매매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매매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에도 아동매춘과 여성매춘은 감소되지 않으며 이는 범죄의 연결 고리로서 작용하고 있어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방콕의 한 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1993-95년 사이 지하경제 규모는 1조-2조 바트에 이르는데 그중 여성의 매매춘으로 번 돈이 4,500-5,000억 바트에 달하며, 태국여성인력이 일본, 대만 그리고 독일에 진출하여 600-800억 바트를 벌여 들었다(Somswasdi 1999:30).

태국의 매춘법령으로는 1908년 전염병방지법(Contagious Disease Prevention Act), 1956년 형법 제282-286조, 1960년 매춘금지법, 1966년 유흥법, 1996년 매춘방지 및 금지법 등이 있다. 태국은 1956년 형법에 의해, 매춘은 범죄이며 고객을 제외하고 그것을 상행위로 하는 모든 관계자를 포함해 유죄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형벌로 최고 6개월 징역과 2,000 바트 정도의 벌금 또는 그 양쪽 모두를 부과하였다. 1996년 매춘방지 및 금지법에서 매춘부와 고객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아동매춘, 인신매매, 매춘사업에 관한 형벌 및 벌금부과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이를테면 매춘방지 및 금지법 제 6조에 매춘을 목적으로 매음굴에서 매춘을 알선한 자는 1개월 이하의 구금과 또는 1,000 바트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 둘 다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딸을 매매하는 부모도 자식에 대한 보호권 상실을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 제8조에 따르면, 성적 욕구를 위해서 매음굴에서 본인의 동의가 있건 없건 간에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과 매춘행위를 한 자는 1-3년의 구금과 20,000-60,000 바트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 둘 다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여성, 청소년, 그리고 여성은 폭력과 불공정한 대우로부터 국가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1997년 신헌법의 제54조항에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예방과 금지법이 1997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추원정부는 성범죄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의 내용은 남성과 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방어하고 18세 이하 15세의 음성과 사진을 이용한 포르노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포르노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이 법은 15세 이하 아이들이 당한 범죄에 대한 조사와 재판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15세 이하 아이들은 그들을 도와줄 심리학자와 사회사업가 그리고 특별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태국정부는 점차 법을 강화시킴으로써 매매춘 근절에 노력하며 더불어 정부는 시민단체와의 협력 하에 매춘문제 해결과 매춘여성의 정상적인 사회생활복귀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엔과 협력하여 매춘에 빠져들 위험이 있는 소녀를 돕는 데 협력하고 있다.<sup>22)</sup> 정부는 덴마크정부의 지원을 받아 NCWA의 주도하에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특히 북동부 및 북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즉, 교사, 학부모, 그리고 위험에 처한 어린 소녀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Teachers, Parents and Young Girls at Risk)과 학교에서의 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소녀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정규교육 또는 비정규 교육의 훈련비용을 중등학교나 기술학교를 마치는 18세까지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성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며 어린 소녀들이 매춘산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22) UNICEF(유엔 아동 비상기금)에 의해 청소년직업발전프로그램(Youth Career Development Program)이 실시되고 있으며, 1996년 이후 6개의 선도(leading) 호텔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주의 훈련과정을 마친 소녀들을 고향에 돌아가도록 설득하거나 또는 이 호텔들에 고용하기도 한다.

록 자립심을 증진시켜 준다. 성교육을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에 대해 존엄성을 갖도록 하며 매춘의 결과 발생하는 성병과 AIDS에 대한 교육과 지식(딸) 매매에 부당함을 지적하여 여성의 존엄성을 인식시킨다. 이와 함께 북동부 및 북부 지역에 전통적 관습에 의해 부모부양에 책임이 있는 딸의 매매에 관대한 부모 또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해 미숙련노동에 종사하여 소득이 낮은 여성의 부모에게 일부 재정지원을 하기도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에게 중등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과 직업 선택의 기회를 증대시키며, 공식제도권의 교육을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는 서비스부문의 직업을 위한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쉽게 매춘산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나 승려들이 소녀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소중함과 전통적 가치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교육한다. 뿐만 아니라 TV 방송을 통해 가족 — 부모·후견인·매춘산업의 종사자 — 에게 매매춘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아동매춘근절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 V. 결론

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아내, 어머니, 그리고 여성근로자로서 남성과 함께 국가발전의 주요한 인적자원이다. 1974년 헌법 제3장 제27조와 제28조에서 남녀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로 인하여 태국 여성은 여전히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법적으로 성차별조항이 잔존하여 사실상의 평등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태국 여

성발전정책은 국가발전의 주체세력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을 사실상의 평등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 여성의 지위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태국에서 여성발전정책은 1975년 유엔 세계여성대회의 영향으로 태국사회 내의 여성에 대한 문화적·법적 차별조항을 제거하여 남녀동반자의 남녀평등을 넘어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를 목표로 국가적 차원에서 최초로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에 의해 추진되었다. 1980년대 이후 태국 여성발전정책은 정부기구와 시민단체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에 의해 가족법 개정과 노동법 개정을 통해 성차별적인 조항을 제거하거나 개선하며, 국가정책과정에서의 여성의 평등참여를 촉구하는 법개정, 그리고 매매춘 근절을 위한 법체계 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남녀평등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에 의해 성차별 철폐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발전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발전정책 전담기구 국가여성위원회(NCWA)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정책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의 입장을 반영하는 여성발전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 시민단체들은 법적·문화적으로 차별 받고 있는 여성의 복지와 가족법 개정 요구, 매매춘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대체로 태국은 여성발전정책의 이행에 있어서 정부기구와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라셋랏썬(Prasith-rathsint)이 비평한 바와 같이 21세기의 남녀평등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태국의 여성발전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기구의 조직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Prasith-rathsint 1989:226-228). 첫째, 각 기관사이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 둘째, 여성조직설립의 중요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셋째, 풀뿌리차원에서 여성조직설립의 준비성과 욕구가 부족하다. 넷째, 다양한 차원에서 여성조직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다섯째, 모든



차원에서 여성발전계획에 관한 협력이 부족하다. 여섯째, 활동단체를 여성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조부족이다. 이외에도 정부기구와 시민단체와의 자발적인 협조부족, 지속적인 서비스의 결여, 재정 확보의 어려움, 여성발전의 정책 및 방향의 통합 및 자립심 부족 등이다.

미래의 태국의 여성발전 정책과 방향은 국제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인신매매와 매춘산업에 의한 인권문제와 여성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그리고 고용인의 보건과 안전문제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여성발전에 관한 예산의 통합과 국가예산의 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기구와 시민단체가 함께 여성발전 프로그램을 위한 행정협력과 여성관련 정보에 대해 책임 있는 여성정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태국 여성발전정책, 태국 여성발전 프로그램, 1997년 헌법, 국가여성위원회, 시민단체**

#### 참고문헌

- 김은경. 2000. “유엔과 여성발전.” 이범준 외 『21세기와 여성』. 서울: 나남출판.
- 李永愛. 1996. 『性・權力・政治』. 서울: 法文社.
- 이영애편. 2001. new 밀레니엄의 성 정치학. 서울: 法文社.
- 최민자. 2000. “여성정책과 미래.” 이범준 외 『21세기와 여성』. 서울: 나남출판.

- 황규희. 1999. “태국매춘에 관한 일 고찰.” 『아시아지역연구』 2.
- 황규희. 2000. “IMF관리체제하에서 태국여성의 지위.” 『한국태국학회논총』 8.
- Boonchalaksi, Wathinee & Guest, Philip. 1996. *Prostitution in Thailand*. Bangkok: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Social Research, Mahidol University.
- Doneys, Philippe 2002. “Political Reform Through the Public Sphere: Women's Group and the Fabric of Governance.” McCargo, Duncan(ed.). *Reforming Thai Politics*. Copenhagen : NIAS.
- Hantrakul, Sukanya. 1985. “*Prostitution: An the Heart of Sex domination, Ban Mai Roo*”(in Thai) 1(2): 42-49.
- Office of the National Commission in Women's Affairs. 1999. *Women's Development Plan in the Eigh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1997-2001)*. Bangkok: Kurusapa Latphrao Press.
- Pongsapich, Amara & Kataleeradabhan, Nitaya. 1997. *Thailand Nonprofit Sector and Social Development*.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 Pongsapich, Amara & Wimolsiri Jamnarnwj. 1998. *Social Status of Women in Thailand*. Bangkok: Canada Fund.
- Poonnachit-Korsieporn, Angkarb. 1999. “The Women's Movement and the Present Status of Women in Thailand.” *Asian Women* 9:99-124.
- Prasartset, Suthy. 1995. “The Rise of NGOs as Critical Social Movement in Thailand.” Thai NGO Support Project(ed.), *Thai NGOs: The Continuing Struggle for Democracy*. Bangkok: Edison Press Products Co., Ltd.

- Prasith-rathsint, Suchart(ed.). 1989. *Thailand's National Development: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Thai University Research Association &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 Somswasdi, Virada. 1999. *Some Pertinent Legal and Social Issues on Women in Thailand*. Chiangmai : Ming Muang Navarat Co., Ltd.
- Sopchokchai, Orapin. 1998.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ailand." TDRI 13(4):11-20.
- Srisamphan, Napat. 1997-1998. *Sathanaphapsatrithai NaiChuwang 2 Thotsawatsachaksatrisakhon(1975-1995)*(태국여성의 지위: 1975-1995).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Social Research Institute.
- Tantiwiramanond, Darunee & Pandey, Shashi Ranjan. 1991. *By Women, For Women: a Study of Women's organizations in Thailand*. Singapore: ISEAS.
- Thabchumpon, Naruemon. 2002. "NGOs and Grassroots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Reform Process." McCargo, Duncan(ed.). *Reforming Thai Politics*. Kopenhagen : NIAS.
- Thomson, Suteera & Thomson, Sheila. 1993. *Women and Politics in Thailand Options For The 1990s*. Bangkok: Gender 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 [http://www.inet.co.th/org/ncwt\(03/08/17\)](http://www.inet.co.th/org/ncwt(03/08/17)
- [http://www.inet.co.th/org/tncwa\(04/01/05\)](http://www.inet.co.th/org/tncwa(04/01/05)
- <http://www.unifem-eseasia.org/TechPapers/GenderDevelopment2000/g...>  
(02/04/01)
- Nation 00/07/10.
- Women's Wire 96/04/09.

Abstract

## Policies on Women's Development in Thailand

Kyu Hee Hwang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uring the UN's Decade of Women(1975-85) as it followed the period of the “democracy boom(1973-76)” in Thailand. Since that time, several women activists and social workers have felt an inadequacy in the government's current views and approaches to the issue of women's development. Increased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was attained in the 1974 Constitution, the result of pressure from a movement promoting the status of women. This paper focuses on the policies on women's development in Thailand in order to solve the source of inequality of women's right.

Policies on women's development in Thailand have influenced both by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conventions and national legislation. Thailand adopts the obligations its government has made under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agreements, protocols and commitments. Among the most relevant are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International Labor Convention and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Main objectives of the women's development policies can be summarized in to three broad categories as follows: To enhance women's economic and political opportunity and choices so that they can fully develop their

potential; To encourage women to become more involved in all aspects of national development and at all level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not be confined to their role in the family; To create a national environment that will be supportive of women's employment.

In 1989, the Nation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s was established as the national machinery for promoting and coordinating effort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 Its main responsibility is to advise the Government on women's issues, prepare policy statements and development plans for submission to the cabinet for approval, and make recommendations on legislation that may affect women's human rights and their basic freedoms.

NGOs on women in Thailand are broad bases, raging from grassroots organizations of people at the upper level of Thai society. According to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they are paying more attention to international developments that impact on women, such 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s.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Thailand(NCWT) is one of the largest, longest lasting and best-known women's organization. It is an umbrella organization of women NGOs whose network reaches all provinces of Thailand. Recently NCWT has made serious and quite successful attempts to reach out and work on a partnership basis with grassroots women's group.

After the Constitution 1997 which is specified that men and women have equal rights, and unjust discrimination against a person on the grounds of sex in not permitted, NCWA as well as NGOs worked throughout the constitution drafting process to ensure the provisio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and social justice.

**Key words:** Policy on Women's Development in Thailand, Women's Development Plan in Thailand, Nation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s Constitution 1997, NGO